

고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71호)

심사 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5. 26. 고성군수
나. 회부일자 : 2006. 5. 26.
다. 상정·의결일자 : 2006. 6. 7.

2. 개정이유

성실납세자가 대우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하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제도와 2006년도 시·군세조례 정비안 합동직무 결과에 따른 표준안에 의거 고성군세조례 중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지방세 1억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 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 2)
나. 소득세할 주민세 수정신고대상에 납세지 착오에 대하여 수정신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여 납세자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 부여(안 제22조제1항)
다. 재산세 과세표준 규정 삭제 (안 제25조)
라.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할 수 있도록 주택분 재산세 납기 조정(안 제25조의2 제2항 제3호)
마. 공매 차량에 대하여 매수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매수인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로 규정 (안 제36조 제3항)
바. 자동차세 수시부과 대상을 영업용 및 비영업용 자동차가 상호 변경되는 경우를 추가하여 자동차세 수시부과 대상 조정(안 제38조 제2항 제4호)
사. 담배소비세 세율이 변경됨에 따른 조문개정과 저가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특례 규정 삭제 (안 제55조)
아. 재산세 납기 조정에 따라 재산세의 종세인 도시계획세 납기 변경 (안 제90조 제2항 제3호)

4.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 2006 - 261호
- 의견 및 제출사항 없음

나. 관련공문

- 경남도 세정과-1393(2006.02.08) 및 세정과-2355(2006.03.07)
군세조례 표준안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성실납세자가 대우받는 성숙한 납세문화정착을 위하여 지방세의 경우도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 도입과 지방세 개정과 관련한 시·군세 조례 정비안 합동직무 결과에 따른 표준안에 의거 불합리한 고성군세 조례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도세 및 군세의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에 대한 명단 공개대상자의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주택분 재산세 납기를 2회로 나누어 고지하던 것을 소액인 경우 납세자의 불편과 징세비 및 인력낭비 등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납기를 7월에 전액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 담배소비세 세율이 변경됨에 따른 조문 개정과 저가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특례규정을 삭제하는 등 지방세법령과 중복되어 별도 규정이 불필요한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이었습니다.
- 고성군세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은 표준조례안에 따라 입법예고 등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55조의 담배소비세 세율변경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와 저가담배에 담배소비세 과세특례 조항 삭제로 인한 세수 결함은 없는지 제출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질의 및 답변 : 없음

7. 토론 : 없음

8. 심사결과

- 2006. 6. 7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